춘의1-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08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7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 제145회 부천시의회(제1차 정례회)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8년 7월 16일) 상정・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)

□ 제안이유

-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, 2010부천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(2006.9.18) 2006년 12월 26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임.
- 본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확보, 주거환경개선, 쾌적한 도시 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 코자하며,
-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원 106,222.7㎡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임.
- 나. 주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녹지, 도로 등을 건설하여 기반시설확보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.

□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(안)

구역면적	택지면적	정비기반시설 등	건폐율	용적률	계획세대수	비고
106,222.7 m²	83,122.7 m²	23,100.0 m²	17.10%	232.03%	1,380세대	

1. 정비구역 결정조서

구분	정비사업의 구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적(m²)	비고
신규	주택재개발 정비사업	춘의1-1구역	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원	106,222.7	

2. 토지이용계획(기반시설계획)

구 분		명 칭		면 적(m²)		비율	비고
1 1		'ð ´ð	기정	중(감)	변경	(%)	山工
	합	계	106,222.7	_	106,222.7	100.0	
	소	계	11,145.1	증) 11,954.9	23,100.0	21.8	
7) 1) 7) 1)		도로용지	11,145.1	감)4,900.6	6,244.5	5.9	
정비기반 시설 등		근린공원	_	증) 15,196.0	15,196.0	14.3	
15 0	어린이공원		1	증)1,659.5	1,659.5	1.6	
	소	계	95,077.6	감)11,954.9	83,122.7	78.2	
	택지1	공동주택용지	76,941.3	감)11,954.9	64,986.4	61.2	
택지 등	택지2	종교용지	1,862.5	_	1,862.5	1.7	
471 8	택지3	존치부지(상가)	7,451.2	_	7,451.2	7.0	·
	택지4	존치부지(아파트)	8,822.6	_	8,822.6	8.3	

3.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

구역면적(m²)	정비기반시설면적(m')				
106,222.7	계	근린공원	어린이공원	도로	
100,222.7	23,100.0	15,196.0	1,659.5	6,244.5	

4.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・건폐율・용적률・높이・층수에 대한 계획

결정	가구또는					건축시	설계획	
구분	획지구분	위치	면적(m²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충수 (높이)	연면적 (m²)	주된용도
	획지(계)	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대	106,222.7	17.10	232.06	30층 이하	220,810.59	공동주택 및 기타시설
신설	택지1 (공동주택부지)	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1-2번지 일대	64,986.4	17.10	232.06	30층 이하	220,810.59	공동주택 및 부대시설
신설	택지2 (종교용지)	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43-2번지 일대	1,862.5	362.5 관계 법규에 의함				종교시설
신설	택지3 (존치부지)	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대	7,451.2	55.63	295.28	13층 이하	35,570.53	공동주택 및 상가
신설	택지4 (존치부지)	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91번지 일대	8,822.6	21.78	294.50	20층 이하	25,986.054	공동주택
	용적률	완화	○기본계획용적률 204%, 개발가능용적률 234%이하 ○공공시설부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: 30.0% (공공시설 확보부지율 : 21.8%)	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○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- 85㎡ 이하 : 총 건설 세대수의 80%이상 ○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: 총 건설세대수의 17%이상					%이상
	건축 [,] 관한		- 건축법	등 관계	법규에	의함		

5. 정비사업 시행계획

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· 복리시설 건설 공급

구분	기존 세대수	예정 세대수	증감 세대수	비고
세대수	1,919 세대	1,380 세대	감) 539세대	

□ 관련근거

○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내지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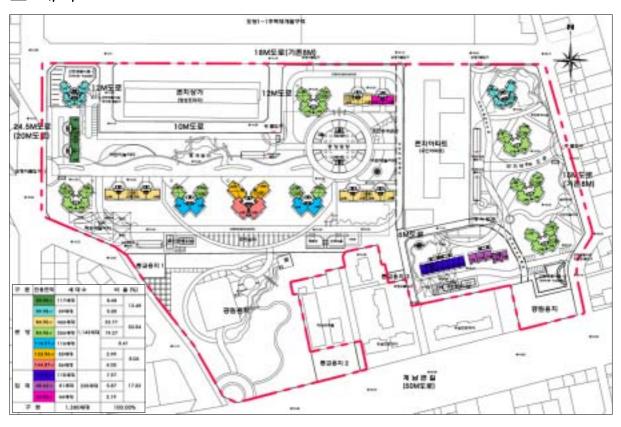
□ 참고사항

- 결정권자 : 경기도지사
- 붙임 토지이용계획도 및 배치도 1부. 끝.

□ 토지이용계획도



□ 배치도



- 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
-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나. 반대토론 : 없 음

- 5. 심사결과
 - 찬성의견채택
- 6. 소수의견의 요지
 - 없 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○ 없 음
- 8. 붙임서류 : 의견서 1부.

중동1-1, 춘의1-1, 송내1-2, 여월1-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심곡본동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서

	273,274,		중동1-1,춘의1-1,송내1-2,여월1-1구역 주택재개발
의안번호	275,276,	안건명	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심곡본동 주택재개발
	277		예정구역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(안)
괴 츠 기	의 결		제145회 부천시의회 (제1차 정례회)
제 출 자 부천시장		연월일	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(2008. 7. 16)

중동1-1,춘의1-1,송내1-2,여월1-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심곡본동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서

○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, '2010 부천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"이 수립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을 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'상 주택재 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, 주거환경 개선,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 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

○ 각 지구별 및 공통사항으로

- 뉴타운 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등 개발사업의 동시 다발 적 추진으로 인한 도시공동화 현상, 전 · 월세 문제등 지역 사회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바, 도시균형개발과, 뉴타 운개발과, 건축과 등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
- 송내 1-2구역내 신한일전기 식당부지 및 건물이 편입되어 철거되면 신한일전기 회사원의 식사제공에 문제점이 발생

- 되니 공장 본관부지내 식당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조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요망
- 도로확충계획에 따라 구역별 주변도로만 확충하는 계획 수립으로 간선도로와의 연결도로 일부구간에서 병목현상 이 발생하여 교통체증현상 발생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 방안 마련
- 심곡본동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당초 계획 대비 변경계 획중 구역 남측 자연녹지와의 지구계 도로가 폐쇄되어 도로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
- 이상과 같은 의견이 반영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예정구역 기본계획변경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<u>찬성</u> 의견을 채택함.』

2008. 7. 16.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

춘의1-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

의 번	안 호	제274호
의	결	2008. 7.18
년 _윝	<u>일</u> 일	(제145회)

제출년월일: 2008. 6.3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, 2010부천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(2006.9.18) 2006년 12월 26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임.
- 본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 하여 기반시설확보, 주거환경개선, 쾌적한 도시 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 코자하며,
-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원 106,222.7㎡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임.
- 나. 주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녹지, 도로 등을 건설하여 기반시설확보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.

□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(안)

구역면적	택지면적	정비기반시설 등	건폐율	용적률	계획세대수	비고
106,222.7 m²	83,122.7 m²	23,100.0 m²	17.10%	232.03%	1,380세대	

1. 정비구역 결정조서

구분	정비사업의 구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적(m²)	비고
신규	주택재개발 정비사업	춘의1-1구역	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원	106,222.7	

2. 토지이용계획(기반시설계획)

구 분		명 칭		면 적(m²)		비율	비고
구 분		ે જે 	기정	증(감)	변경	(%)	川上
	합	계	106,222.7	_	106,222.7	100.0	
	소	계	11,145.1	증) 11,954.9	23,100.0	21.8	
w1111		도로용지	11,145.1	감)4,900.6	6,244.5	5.9	
정비기반 시설 등		근린공원	ı	증) 15,196.0	15,196.0	14.3	
- 1 0	어린이공원		ı	증)1,659.5	1,659.5	1.6	
	소	계	95,077.6	감)11,954.9	83,122.7	78.2	
	택지1	공동주택용지	76,941.3	감)11,954.9	64,986.4	61.2	
택지 등	택지2	종교용지	1,862.5	_	1,862.5	1.7	
변기 중 1	택지3	존치부지(상가)	7,451.2	_	7,451.2	7.0	
	택지4	존치부지(아파트)	8,822.6	_	8,822.6	8.3	

3.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

구역면적(m²)	정비기반시설면적(m²)					
106 222 7	계	근린공원	어린이공원	도로		
106,222.7	23,100.0	15,196.0	1,659.5	6,244.5		

4.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・건폐율・용적률・높이・층수에 대한 계획

결정	가구또는			건축시설계획					
구분	획지구분	위치	면적(m²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충수 (높이)	연면적 (m²)	주된용도	
	획지(계)	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대	106,222.7	17.10	232.06	30층 이하	220,810.59	공동주택 및 기타시설	
신설	택지1 (공동주택부지)	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1-2번지 일대	64,986.4	17.10	232.06	30층 이하	220,810.59	공동주택 및 부대시설	
신설	택지2 (종교용지)	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43-2번지 일대	1,862.5	관계 법규에 의함			종교시설		
신설	택지3 (존치부지)	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대	7,451.2	55.63	295.28	13층 이하	35,570.53	공동주택 및 상가	
신설	택지4 (존치부지)	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91번지 일대	8,822.6	21.78	294.50	20층 이하	25,986.054	공동주택	
용적률 완화			○기본계획용적률 204%, 개발가능용적률 234%이하 ○공공시설부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: 30.0% (공공시설 확보부지율 : 21.8%)		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○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- 85㎡ 이하 : 총 건설 세대수의 80%이상 ○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: 총 건설세대수의 17%이상						
건축선에 관한 계획			-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						

5. 정비사업 시행계획

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· 복리시설 건설 공급

구분	기존 세대수	예정 세대수	증감 세대수	비고
세대수	1,919 세대	1,380 세대	감) 539세대	

□ 관련근거

○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내지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

□ 참고사항

- 결정권자 : 경기도지사
- 붙임 토지이용계획도 및 배치도 1부. 끝.

□ 토지이용계획도



□ 배치도

